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55148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4. 22.
판 결 선 고	2016. 7.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7.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4

가. 원고들은 2014. 10. 29. [redacted]구 C 대 105.5㎡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각 2분의 1씩 취득하고(취득가액 860,000,000원), 취득세(1천분의 20의 세율 적용)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6. 29.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각 지분의 취득가액인 430,000,000원에 해당하는 세율(1천분의 10)로 산정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사이의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7.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지분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의 취득원인 별로 취득세율을 달리 정하면서 특히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주택 가액에 따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4

취득세의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제11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11조 제1항이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고, 특히 제8호는 주택 가액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11조 제2항의 '각각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하는 주택 가액에 따른 세율, 즉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이 될 수 있다.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제7호(농지 이외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세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세율을 경감하여 주면서 취득 당시의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달리 정한 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고,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취득 부동산을 공유 형태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결정하게 되면 조세상 혜택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 되고, 또 일부러 지분을 쪼개어 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규정취지를 잠탈할 수 있다[다만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 볼 여지도 있으나(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서 공유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을 공유 형태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지분의 가액이 되나 세율은 취득 당시 주택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주택의 취득 당시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4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나영

판사 윤준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4

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4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끝.